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김상용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김상용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합동체포조 편성 문건과 체포 실행의 연결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합동체포조 또는 제2수사단 관련 인력 편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군 징계에서 해임 처분이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 명단의 작성·승인·실행 중 무엇을 직접 했는지는 공개 기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인력 편성 명부를 누가 요구하고 작성했는지, 본인의 결재·서명·발송 지시가 있는지, 예비 명단 작성과 실제 체포 임무의 부여·착수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상 현황 파악과 위법한 체포·구금 준비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불법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준비를 알고 지시했다면 그 의미는 달라지므로 문건의 목적·시기·상대방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동체포조 구성안에 관여한 행위와 실제 체포를 지휘·집행한 행위는 단계가 다릅니다. 다른 부서의 기획을 알게 된 시점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명단 원본·수정 이력, 인력 편성 결재 문서, 체포 대상 정보 취득·전달 주체, 현장 출동이 있었다면 해당 지시 계통을 확인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수사 인력을 직접 운용·지휘한 정도와 실행된 강제조치의 범위, 조직 내 지위와 독자적 재량을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형사판단과 별도로 이미 진행된 징계는 사실관계의 참고자료로만 다뤄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합동체포조 편성 문건과 체포 실행의 연결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김상용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